FTA 품목분류

농기계의 품목분류

김성채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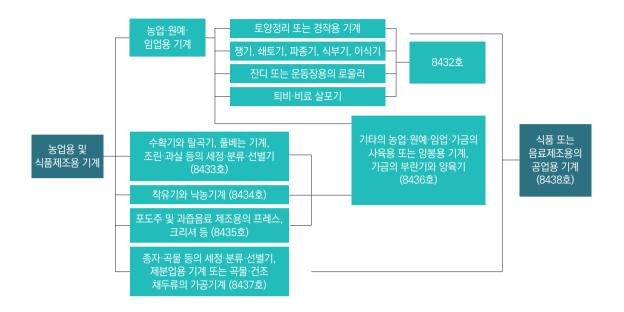


1. HS 품목분류표에서 농기계류의 분류 체계

관세율표 제84류(기계류)의 구성은 크게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 제8425호부터 제8478호까지의 산업분야에 따른 분류로 나눌수 있다. 제84류에서 농업용 기계는 보통 제8432호부터 제8438호까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양수기(제8413호), 농약살포기(제8424호) 등 이 그룹 밖에 포함되는 기기도 있으며, 제8426~8430호와 제8701호 또한 자주식 기계의 관점에서 농기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밖에 수지식 공구 형태의 농기계는 제8467호에 포함된다.

1) 제8432호~제8438호

제84류에서 농기계 그룹으로 이해되는 호는 제8432 호부터 제8436호(또는 제8438호)까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제8432호~8436호까지 각종의 농업용, 임업용, 원예용 기계 등이 분류된다. 호의 용어에 따라 제8436호에는 제8432호~8435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농업용 기계를 모두 분류하되, 제8437호의 종자선별기와 제분공업용 기계는 (맥락상 농업용 기계로볼 수도 있으나) 제8436호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제8438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제조용 기계가 분류된다.



제8432호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제8432호에는 토양정리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농기계와 잔디나 운동장용 롤러 등이 분류된다. 이 호의기계는 보통 동물이나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형태이거나 차량에 장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84류전체의 맥락에서 제8432호는 경작의 첫 단계(땅을 갈고 정리한 후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단계)와 작물의성장 단계에 관여하는 기계가 분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제8432호에는 네 가지 그룹의 기계가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경작용 토양의 정지작업용 기계이다. 토양의 정지작업이란 경작을 위하여 땅을 갈거나 덩어리진 흙을 부수고 고랑을 만드는 등의 준비 또는 정리작업 을 말한다. 새로운 경작을 위하여 이전 작물의 뿌리나 흔적을 제거하는 기계나 돌을 골라내는 기계도 이 호에 포함된다.



〈토양의 정지작업용 기계(쟁기, 쇄토기, tiller machine 등) - 제8432호〉

두 번째 그룹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나 퇴 비(동식물의 웨이스트로부터 나온 식물 영양요소)를 살포해주는 기계이다.





〈비료살포기와 퇴비살포기 - 제8432호〉

세 번째 그룹은 식수(植樹)나 파종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농사의 시작으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 는 기계가 분류되며 이 그룹에서 식수(planting)라 함 은 모종이나 묘목을 심는 것을 말한다. 이식 (transplant) 또한 모종이나 묘목을 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벼농사용의 이앙기가 대표적인 이식기¹⁾라고할 수 있다.







〈파종기, 모종 planter, 이앙기(왼쪽부터) - 제8432호〉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쟁기질 후나 작물 생장기간 중의 토양의 정리 · 제초나 지균(地均: levelling)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이다. 땅을 다지는데 사용되는 롤러도 여기에 포함된다.







〈scarifier, weeder(제초기), 롤러(왼쪽부터) - 제8432호〉

¹⁾ 따라서 수목원 등에서 조경용 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목 이식기(tree transplanter)는 제8432호가 아닌 제8436호에 분류 하여야 한다.

제8433호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제8433호에는 수확기나 탈곡기, 풀 베는 기계와 선별기 등이 분류된다.

제8433호 해설서

- 이 호에는 다음의 세 가지 그룹의 물품이 포함된다.
- (a) 농작물의 수확기[예: 예취(reaping)·채취 (croplifting)·수집(gathering)·적취(picking)·탈곡 (threshing)이나 결속(binding 또는 bundling)], 짚 이나 건초 결속기
- (b) 풀 베는 기계(Hay or grass mower)2)
- (c)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 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³⁾

제8432호의 기계가 경작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생장 단계에서의 관리에 사용되는 기계라면 제8433호의 기계는 그 이후 수확과정에 기여하는 기계들이다. 그 첫 번째 그룹은 곡물, 열매, 잎줄기, 뿌리채소 등을 수확하는 기계류인데 제8433호에 분류되는 수확기는 그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난다.







〈밀 수확기, 포도 수확기, 감자 수확기(왼쪽부터) - 제8433호〉







〈밀 수확기, 포도 수확기, 감자 수확기(왼쪽부터) - 제8433호〉

- 2) 제8432호의 weeder는 작물을 제외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호의 풀베는 기계 또는 잔디 깎는 기계와는 다르다.
- 3) 수확한 농작물(과실이나 농산물)이나 새의 알을 선별하는 기계는 이 호에 포함되나 농작물 중 낟알이 작은 종자, 곡물, 채두류를 선별하는 기계는 제8437호에 포함된다.

제8433호의 두 번째 그룹에는 잔디나 풀 깎는 기계가 포함된다. 이들은 독립된 형태의 기계이거나 트랙터 에 장착되는 형태의 기기일수 있다. 그러나 모터나 엔 진이 내장된 휴대용의 풀 베는 기계는 제8467호에 분 류된다.







〈밀 수확기, 포도 수확기, 감자 수확기(왼쪽부터) - 제8433호〉

제8433호의 세 번째 그룹에는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의 형태의 어느 것이든 간에 새의 알, 과실, 감자, 양파, 구근, 당근, 아스파라거스와 오이와 같은 농산물을 크기, 모양, 무게 등에 따라서 세정·분류나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도 분류한다. 그러나 종자, 곡물, 건조한 채두류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는 제8437호에 분류한다.





〈토마토 선별기(왼쪽), 감자 세정·선별기 - 제8433호〉



제8434호 착유기와 낙농기계

제8434호에는 착유기(milking machine)와 낙농 기계(dairy machinery)가 분류되며, 낙농기계란

우유처리(균질화) 및 유제품(버터, 치즈) 제조기계를 포함한다.







〈착유기, churning machine(교유기), 치즈성형기(왼쪽부터) - 제8434호〉

제8435호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제8435호에는 과실주나 주스 제조를 위하여 과실을 압착하거나 분쇄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수 동이나 동력조작식이 모두 포함되며, 프레스 형태로 압착하는 기계나 회전하는 파쇄 실린더에 의하여 과일을 부수는 것들이 있다.





〈포도압착기와 apple crusher - 제8435호〉

제8435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형의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간단하게 과실주스를 만 들거나 즙을 내는 주방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고 (보통 제8509호), 과실주 또는 과실주스를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제조하기 위한 장치가 이 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8436호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제8436호는 농업용 기계 그룹의 잔여 호라고 할 수 있으며, 제8432호~8435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농업용, 원예용, 임업용, 가금사육용, 양봉용 기계가 분류된다. 잔여 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분류되는

기계의 분야는 매우 넓으나 규모나 산업에서의 비중은 제8432호나 제8433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볼수 있다.

제8437호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제8437호는 농업과 제분업의 경계에 있는 호이다. 이호의 기계들이 농산물(종자, 곡물, 채두류)을 가공하고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농업용 기계 범주에 포함될수 있으나, 제84류의 산업별 분류체계에서 제8437호는 "농업용" 기계보다는 "제분업용" 기계의 범주로이해하는 것이 더 맥락에 맞는다.

제8437호 해설서

제8437호에는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기계가 분류된다. (I) 종자 ·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 · 분류 기 · 선별기

(II) 제분업용 기계

(III) 곡물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 (제8437호 해설서)

제8437호 세정·선별·분류기의 가공대상은 종자, 곡물, 건조한 채두류이다. 종자, 곡물이나 채두류와 같이

알곡이 작은 농산물(제분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들) 의 세정·선별·분류기는 제8437호에, 그 밖의 농산물 (조란이나 열매, 채소류)의 세정·선별·분류기는 제8433호에 분류된다. 제8437호에서 말하는 "종자 (seed)"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제12류에서 말하는 종자의 일반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호 용어에서 "곡물(grain)"은 제10류의 "곡물 (cereal)"에 한정하기 보다는 제10류와 11류 각 호에 포함되는 "낟알(grain)"상의 곡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채두류(leguminous vegetable)는 제0708호에 분류되는 콩과의 채소이며, 이를 건조하면 제0712호에 포함되고, 꼬투리를 제거하면 제0713호에 포함된다. 이 그룹 기계의 가공대상인 채두류는 제0713호의 채두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분공업의 일반적 공정에서 볼 때, 제8437호 기계의 사용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곡물이나 채두류를 가공(까끄라기 제거, 박피, 도정, 압착 등)하고, 다음으 로 이를 세정, 분류, 선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분 쇄 및 제분하게 된다. 제분공업에서 공정순으로 사용되는 기계는 위 해설서에서 언급한 (III)그룹 - (I)그룹 - (II)그룹 순이다.

제8438호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제8438호에는 식품이나 음료수를 조제 또는 제조하는 기계가 분류된다. 우선 농기계 분류체계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제8437호의 기계(제분공정)를 통하여가공된 재료를 토대로 한 베이커리 공정에 투입되는기계가이호에 분류된다. 그리고 보다큰 틀에서 본다면제1부나 제2부의 재료를 가공하여 제3부의 유지나제4부의 식음료를 가공하는 기계가이호에 포함된다고볼수있다.

세부적으로는 베이커리 기계, 스파게티, 설탕과자, 초콜릿, 설탕 등의 제조용 기계, 양조장 기계, 육류 · 어류의 조제용 기계, 과실 · 견과 · 채소의 조제용 기계, 그 밖의 각종 식음료의 조제용 기계가 분류된다. 이 호의 가공기계는 그 대상재료나 가공범위나 매우 넓은 편이지만, 식재료를 직접 가열하여 굽거나 익히거나 조리(튀기거나 훈제)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들은 보통 제8417호, 제8419호, 제8514호, 제8516호 등에 분류된다.)

2) 그 밖의 농기계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제8401호부터 제8424호 에 포함되는 기계는 (제8432호부터 제8436호가 아 닌) 이 그룹에 분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8413호 에 포함되는 액체펌프나 제8424호에 포함되는 농업 용·원예용 스프레이어 등이 있다.







〈원심펌프 - 제8413호〉

〈휴대용의 방제기 - 제8424호〉

낙농기계(dairy machinery)의 경우도 버터나 치즈 가공 공정에서 기계적인 공정(혼합, 교반, 가압, 회전 등)을 담당하는 기계는 제8434호에 분류되나, 온도변 화를 기반으로 한 공정(저온 숙성, 살균 등; 제8419호), 원심분리나 필터링 공정(제8421호)과 관련된 기계들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온살균기(제8419호)〉



〈치즈숙성통(제8419호)〉

제8467호에는 전동기, 압축공기시스템 또는 내연기 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각종의 "수지식 공구"가 분 류되고, 그 범위는 농업용과 일반 산업용을 모두 포 함한다.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제8432호나 제 8433호의 기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라도 그 작동방식이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수지식 공구의 형태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휴대용 예초기, 전동식 전지가위, 수확기(대추, 매실, 올리브) - 제8467호〉



2. 농기계 품목분류의 주요 쟁점

1) 트랙터와 결합된 농기계의 분류

제8701호 해설서

- 이 호에 분류하는 트랙터(tractors)란 본래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이나 무한궤 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중략)
-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트랙터가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영농용 · 임업용 · 도로 주행용의 트랙터 · 토목건설용의 중작업을 하는 트랙터 · 윈치트랙터(winch tractor) 등으 로서 그 추진방식(내연기관 · 전동기 등)이 어떠한 것인지 에 상관없다.

제8701호의 트랙터는 그 자체로 농기계는 아니다. 그러나 트랙터가 가장 널리 쓰이는 분야가 바로 농기계와 관련된 부분이며, 농기계 품목분류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행조종식 트랙터(왼쪽)와 보통의 Farm Tractor - 제8701호〉

제8701호 해설서는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 (tractor fitted with other machinery)의 분류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호환성 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 써레, 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하며, 이 경우 트랙터는 기계와 분리하여 제

870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트랙터에 농업용 방제기나 잔디 깎는 기계가 장착되어 제시되는 경우 트랙터는 제8701호에, 농기계는 해당호(제8424호나 제8433호)에 분리하여 분류하여야한다.





〈트랙터에 장착된 방제기(sprayer)(왼쪽)와 풀 깎는 기계〉

2) 트랙터 vs 자주식의 기계

그러나 트랙터에 장착된 농기계와 자주식의 농기계를 구분되어야 한다. 제84류의 기계 중에는 제87류의 수송기기를 구성하는 주행부 기계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자주식(self-propelled) 또는 이동식(mobile) 기계는 제8426호, 제8428호의 기계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농기계 중에서는 제8432호와 제8433호의 기계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주행부는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기계를 견인하거나 그러한 기계에 동력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트랙터와는 명확히 구별된다.



〈컴바인 - 제 8433호〉



〈자주식 스프레이어 - 제8424호〉

3) 트랙터 vs 화물자동차

또한 농업용이나 원예용·임업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차량으로 상업적으로는 트랙터, 작업트럭, 트레일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를 구성하는 수송기기 형태인 물품도

있다. 이러한 차량들은 농로나 과수원을 주행하기 적합하고 보통의 화물자동차에 비해 차체의 규모나 적재중량이 작은 특징은 있으나 트랙터나 제84류 농기계의 특성은 없다는 점에서 제8704호의 화물 자동차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과수원용 화물자동차 - 제8704호〉

4) 동력전달용 부분품

제8432호에 분류되는 쇄토기나 제조기, 이앙기 혹은 제8433호에 분류되는 수확기 중 일부는 작업목적에 적합한 공구(tool)를 갖추고 이 공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적인 구조는 결합되어 있지만 동력 자체는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계들은 대부분 트랙터에 결합되어 작동되며, 실제 사용될 때는 트랙터로부터 취출된 동력을 공구까지 전달하는데 필요한 동력전달용 부품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동력전달용 부품은 사용하는 기계의 특성상 일견 그 기계에만 전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기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제8483호의 동력전달장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동력전달용 조인트와 샤프트 - 제8483호〉



〈트랙터로부터 전달된 동력을 하나 이상의 기계에 전달하는 동력 취출(Power Take-off) 장치 - 제8483호〉

